

서울동부지방법원 2024. 3. 29 선고 2023가단7509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2024. 3. 22.

판결 선고2024. 3. 29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, ②, ③, ④, ①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C호 부분을 인도하고, 3,150,000원을 지급하며, 2023. 10. 1.부터 위 선내 C호 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5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[별지]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최아름

별지